약정금

[서울고등법원 2015. 4. 16. 2014나2011626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】

【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】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3인)

【제1심판결】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3. 18. 선고 2012가합100860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5. 3. 19.

【주문】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709,790,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5.부터 2015. 4. 16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- 2.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3. 가.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2,252,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2015. 4. 16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나.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.
- 다. 위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- 4. 소송총비용(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) 중 80%는 원고가, 2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7. 4.부터 2012. 4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62,042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9.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 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제3자 매각 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■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■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■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■ 단일점포 전국 1위■ 1인당 전국 여신 1위■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■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 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 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제3자 매각 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 제3자 매각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제안

- 1)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케이티비에스비(KTB-SB)사모투자전문회사(PEF, 이하 '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무한책임사원,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된 법인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이다.
- 2) 피고는 2006. 1.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, 이하 '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(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, 이하 '중앙부산저축은행'이라 한다)을 인수하기로 하면서,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,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투자제안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.
- 田. 인수 및 Exit 구조[3] Exit 구조가. PEF는 2-3년 내에 "중앙부산저축은행"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.제3자 매각 : 연 평균 12.0%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.
- 상장 :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(연 12.0% 이상의 Upside Potential)[4]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.0% 투자수익율 예상 (M&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+ α 가능)IV.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,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(부산지역 1위)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(전국 1위)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(현, 부산2상호저축은행)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[4] 강점1.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: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・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・타 상호저축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 이 사건 사모두사신문외사의 설립

피고는 2006. 2. 2.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고,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(갑 제2호증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조